#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정혜경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6351 발의연월일: 2024. 12. 10.

발 의 자:정혜경·박홍배·박수현

이수진 · 허성무 · 전종덕

윤종오 • 한창민 • 이용우

이재강 의원(10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서는 성희롱 예방을 위해 사업주에게 1년에 한번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. 최근 건설업 등에서 여성 취업자 수가 증가 하고 있는데, 이런 비상시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경 우는 성희롱 예방교육 없이 현장에서 일하는 경우가 다반사임.

그래서, 건설업 등 일용직을 채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성희롱 예방교육을 매달 실시하여, 비상시 사업장에서도 성희롱 예방교육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자 함(안 제13조제1항).

#### 법률 제 호

##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제1항 중 "매년"을 "다음 각 호에 따라"로 하고, 같은 항에 각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. 매년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할 것
- 2. 건설업의 사업주가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 에 대하여 성희롱 예방교육을 매달 실시할 것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3조(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	제13조(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
육 등) ① 사업주는 직장 내	육 등) ①
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	
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	
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	
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	
교육(이하 "성희롱 예방 교육"	
이라 한다)을 <u>매년</u> 실시하여야	<u>다음 각 호에</u>
한다.	따라
<u>&lt;신 설&gt;</u>	1. 매년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
	시할 것
<u>&lt;신 설&gt;</u>	2. 건설업의 사업주가 건설 일
	용근로자를 채용할때에는 그
	근로자에 대하여 성희롱 예방
	교육을 매달 실시할 것
② ~ ⑤ (생 략)	② ~ ⑤ (현행과 같음)